



KIMSCO AVERAGE AND LOSS ADJUSTERS CORPORATION

RM. 703, Dongyang Bldg., No.B, 34-7, Jeong-dong, Jung-gu, Seoul, Korea 100-120

TEL : 02-756-7685 / FAX : 02-756-7678 / E-mail : kkimsco@hanmail.net

ORIGINAL

보고서 번호 : 킴스코 121207

제 출 일 자 : 2012. 08. 29

수 신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 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자본재공제조합/(주)그라운드’ 손해사정 보고

1. 계 약 사 항

가. 보 험 종 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나. 증 권 번 호 : 제 F20110644607 호 [사고번호 : 제 1207142511 호]

다. 계 약 자 : 자본재공제조합

라. 피 보 험 자 : (주)그라운드

마. 담 보 지 역 : 전국일원

바. 보 험 기 간 :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9월 01일

사. 보 험 목 적 물 : 대 물

아. 질 권 사 항 : 없 음

2. 사 고 사 항

가. 사 고 일 시 : 2012년 07월 13일(금) 03:19경

나. 사 고 원 인 : 설치 부주의

다. 사 고 장 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육군 제 부대

3. 총괄표

[단위 : 원]

목적물	보상한도액	손해액	합의금액	잔존물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물	2,000,000,000	992,880	992,880	-	300,000	692,880

◎ 지급 보험금 산출내역

보상한도액 미만의 사고로 합의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산정함.

◎ 보험금 청구인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주)그라운드	복구 완료 후 피보험자 (주)그라운드가 직접 청구하였음.
금 융 기 관	기업은행	
계 좌 번 호	165-059230-01-020	
연 락 처	02-572-0008	

총괄표 란에 회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손해사정사 : 방 효 중 (인)

김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

대표이사장 재혁

조사자 : 김 (인)

HP.011- -

4. 보험계약사항

가. 보 험 종 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나. 증 권 번 호 : 제 F20110644607 호

다. 사 고 번 호 : 제 1207142511 호

라. 계 약 자 : 자본재공제조합

마. 피 보 험 자 : (주)그라운드

바. 보 험 기 간 :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9월 01일

사. 담 보 지 역 : 전국일원

아. 담보위험 및 보상 한도액

담보위험	보 상 한 도 액	비 고
대 물	1사고당 - ₩2,000,000,000 총 보상한도액 - ₩2,000,000,000	-

자. 자 기 부 담 금 : ₩300,000

차. 보 험 조 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II)

날짜인식오류부담보 추가약관

전기공급차질부담보 추가약관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품질저하 부담보 특별약관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카. 기 타 사 항 : 없 음

5. 일 반 사 항

가. 업 체 개 요

- 1) 상 호 : (주)그라운드
- 2) 대 표 자 : 우제욱
- 3) 개 업 년 월 : 2001년 01월
- 4)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7-2번지
선택시티투아파트형공장 209호
- 5) 사 업 의 종 류 : 제조 / 에너지절전시설

나. 생산물 개요

- 1) 모 델 명 : LM 12-20
- 2) 규 격 : 1Φ2w/220V/160KA
- 3) 제조업체 : (주)그라운드
- 4)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육군 제 부대
- 5) 설치일자 : 2010년 7월 11일
- 6) 주요기능 : 낙뢰(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장비 방호, 등전위 및 공통접지시스템
구축, 낙뢰서지 유입계수

다. 피해자 개요

- 1) 부 대 명 : 육군 제 부대
- 2) 중 대 장 : 정 (소령)
- 3) 소 재 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 4) 피해상태 : CCTV 카메라 3대 및 DVR 1대, HDD 1개가 손상되었음.

6. 사 고 사 항

가. 사 고 개 요

- 1) 일 시 : 2012년 07월 13일(금) 03:19경
- 2) 장 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육군 제 부대
- 3) 원 인 : 설치 부주의
- 4) 사고경위 : 피보험자 (주)그라운드스 낙뢰방호 전문 업체로 2010년 7월 5일 피해자 육군 제 부대와 낙뢰방호 시스템 설치계약을 맺고 2010년 7월 11일 사고 장소에 낙뢰방호 시스템을 설치하였음.

상기일시 경 낙뢰로 인하여 사고 장소 CCTV 등에 낙뢰 서지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012년 7월 13일 오전 육군 제 부대로부터 사고 사실을 연락받은 피보험자 (주)그라운드 담당자 김국영 본부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낙뢰방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피해상태를 확인해보니 낙뢰로 인하여 CCTV 3대 및 DVR 1대, HDD 1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음.

금번 사고는 피해품의 손상상태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 (주)그라운드에서 설치한 낙뢰방호 시스템 부품 중, SPD 접지부위가 이탈되어 낙뢰 서지가 CCTV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사고임.

나. 손 해 상 황

금번 사고로 CCTV 카메라 3대 및 DVR 1대, HDD 1개가 손상되었음.

7.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여부

가.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 책임 검토

피보험자 (주)그라운드는 낙뢰방호 시스템을 제조, 설치하는 업체로서, 금번 사고가 발생한 낙뢰방호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각 부품의 연결상태 및 접지상태를 확인하고, 접지부위가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금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담보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 (주)그라운드가 사고 장소에 설치한 낙뢰방호 시스템 부품 중, SPD 접지부위가 이탈되어 낙뢰 서지가 CCTV에 유입되면서 CCTV 카메라 3대 및 DVR 1대, HDD 1개가 손상된 대물 사고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담보내용에 의거하여 담보되는 사고임.

다. 피해자 과실여부

피해자의 개입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 과실은 없음.

라. 낙뢰방호 시스템 내구성 관련사항

피보험자 (주)그라운드는 생산물인 낙뢰방호 시스템의 내구성을 통상 5년으로 보아 재정 경제부 고시 제 2000-21호에 의거 제품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번 사고원인이 각 부품의 성능 및 기능 저하가 아닌 접지부위 이탈로 인한 사고이므로 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조건 중 품질 저하부담보 특별약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8. 손 해 액

가. 평 가 기 준

금번 사고로 손상된 CCTV 카메라 3대 및 DVR 1대, HDD 1개의 제조달가액을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해당 감가상각(공공행전,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CODE : 84] 경년감가율 8.00%)을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리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액으로 적용하였음.

나. 평 가 결 과

감가기준 : 8.00%

사고년월 : 2012년 7월 [단위 : 원]

번호	품 명	수량	단가	제조달가액	보험가액	손 해 액	총감가율	경과년월	구입시기	비 고
1	2EYE-550 카메라	3	390,000	1,170,000	982,800	655,200	16.00%	2년 0개월	2010년 7월	수 리
2	SH-5008 DVR	1	390,000	390,000	327,600	251,160	16.00%	2년 0개월	2010년 7월	수 리
2	HITACHI 500GB	1	103,000	103,000	86,520	86,520	16.00%	2년 0개월	2010년 7월	전 손
-	합 계	5	-	1,663,000	1,396,920	992,880	-	-	-	-

9. 잔 존 물

- 평가가치 없음.

10. 구 상

- 해당사항 없음.

본 보고서는 당사의 양식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 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편중됨
이 없이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합니다.